國語의 音韻論的 變項 制約條件에 對하여

權 仁 瀚*

Ⅰ. 序 論

本稿는 國語의 同化現象을 中心으로 同化規則의 同化主(determinant)와 被同化音(focus) 사이에 介在되는 介在音(intervening material)[1]에 對하여 첫째, 어떤 경우에 개재음이 存在하느냐의 問題와 둘째, 개재음이 존재할 경우 그것은 어떤 分節音들로 이루어 지느냐의 問題를 究明하고자 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音韻論的 變項(phonological variable)에 관한 問題들로서 本稿의 目的은 이 음운론적 변항에 대한 制約條件의 樹立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동화현상에 대하여 論議해온 業績들을 綜合하고, 음운론적 변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硏究史를 槪觀하면서 筆者가 취할 方法論的 基礎를 얻고자 한다.

음운론적 변항에 대한 논의는 原則的으로 同化 및 異化現象에 모두 適用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동화현상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국어는 이화현상이 매우 드문 언어에 속하고, 무엇보다도 필자가 아직은 이화현상을 本格的으로 다룰만한 能力을 갖추지 못하였

* 국어국문학과 4년

1) 本稿에서 determinant, focus, intervening material 등의 用語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쓴다. (李秉根(1977), Jensen (1974) 등 참조).

〔 〕 → 〔 〕 / 〔 〕 x ___

input (=focus) | structural change (=SC) | determinant | intervening material | focus

기 때문이다. 通時的으로 몇몇 이화현상들이 논의되긴 했으나[2] 그 分布가 매우 制限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본 논의의 出發點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움라우트나 구개음화 규칙은 동화주로 i 모음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까닭에 i 모음 역행동화 규칙들로 불린다. 이들의 차이는 첫째, 피동화음이 각각 모음과 자음이라는 점. 둘째,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각각 개재음이 있고, 없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前者를 遠隔同化로, 後者를 隣接同化로 불러 왔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을 簡略하게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1) 움라우트 ; V→〔-back〕/—Coi
(2) 구개음화 ; C→Cʸ/—i

(1)에서의 개재음 C는 〔-coronal〕인 자음들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변항 X[3]를 사용하여 고쳐쓰면 (1′)처럼 된다.

(1′) V→〔-back〕/—Xi

그렇다면 (2)에 대해서도 (2′)처럼 쓸 수는 없을까? 이것이 본고가 의도하는 基本的인 質問이다.

(2′) C→Cʸ/—Xi

우리의 이러한 질문은 一面 의미없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구개음화 규칙은 분명히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음을 두지 않는 인접동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 (2′)를 포괄하는 변항 X에 대한 제약조건을 적절히 부과한다면, 다시 말하여 (2′)에서 X가 자동적으로 ϕ 〔null〕라는 사실을 밝혀 줌과 동시에 (1′)에서의 X가 〔-cor〕인 자음으로 이루어 짐을 밝혀 주는 제약조건을 세운다면 지금까지 원격동화니

2) 異化現象에 대한 論議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李崇寧(1939), 朝鮮語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_____(1960), 中期語의 異化作用의 考察, 學術院 論文集 2.
3) 變項에 관해서는 本稿 Ⅱ장 참조.

인접동화니 하여 따로 說明되어온 규칙들을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운론적 변항에 대한 제약조건을 찾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作業의 意義는 文法 또는 規則의 簡略化를 追求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Ⅱ. 研究史 槪觀

生成 音韻論에서는 두 종류의 變項이 音韻規則에 사용되었다. 하나는 省略的 變項(Abbreviatory Variable)이고, 다른 하나는 本質的 變項(Essential Variable)이다. 이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前者는 많아야 하나이며, 가능한 最大値(maximum value)를 가지고 unique하게 해석되는데 반하여 後者는 몇 개의 값을 代表하는 것이고 그 값은 최소의 것(ϕ)에서 점차 확대된다는 점이 다르다. 後者는 또한 규칙의 적용이 거듭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前者와는 다르다. (Jensen (1974) ; 675~8)

그런데 본질적 변항의 경우는 그 규칙 적용의 性格을 동시적인(simultaneous) 것으로 보느냐, 반복적인(iterative)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有效性에 관한 論難이 있었다. 본질적 변항은 기본적으로 규칙 적용의 성격을 동시적인 것으로 볼 때에만 유효한 것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본다면 규칙 적용의 부분이 重複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칙 적용의 方向性에 관한 논의를 援用하는 길이다. 즉, 順行이나 逆行이라는 규칙 적용의 方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4] 규칙 적용의 성격을 동시적인 것이 아닌

4) Jensen (1974 : 678)에는 順行이나 逆行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例로 Finnish gradation을 들고 있다. 그 규칙과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C_1C_1 \rightarrow C_1 / __ \left[\begin{matrix} V \\ str \neq 1 \end{matrix}\right] C \left\{\begin{matrix} C \\ \# \end{matrix}\right\}$

· rokko+tt+utta+tte→rokotutatte 'you(pl.) are having (someone)

반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질적 변항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되므로 생략적 변항 하나만으로도 充分한 것이다.

이러한 變項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Crossover Constraint, Adjacency Principle, Relevancy Condition, Class Complement Constraint로 이어지는 이 方面의 硏究史를 살펴 보겠다.

2.1. Crossover Constraint와 Adjacency Principle

音韻論的 規則, 가령 鼻音化 規則에서 同化主인 〔+nasal〕에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모음이 비음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규칙들을 배제할 수 있는 제약을 Howard(1972)에서 Crossover Constraint(CC)라 하였다,

(3) a. weak version :
該當 規則의 適用을 받는 분절음은 그 규칙의 determinant나 focus 이외의 要素와는 나란히 할 수 없다.(Howard(1972 : 94)).
b. stronger version :
該當 規則의 focus로서의 내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절음은 그 규칙의 determinant나 focus 이외의 요소와는 나란히 할 수 없다. (Howard (1972 : 95))

이 CC는 결국 "介在音은 어떠한 가능한 focus도 포함해서는 안된다"라고 換言될 수 있는데,[5] 앞에서 말한 비음화 규칙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4) a. 〔+syll〕→〔+nasal〕/_(〔+syll〕) 〔+nasal〕
b. 〔+syll〕→〔+nasal〕/_〔+syll〕 〔+nasal〕

그러나 CC는 介在音에 대한 解釋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제약이 개재음에 대하여 너무 넓게 규정된 것이어서 개재음의 집합 중에서

---

inoculated'. 이를 逆行으로 적용하면 *rokottutatte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5) Jensen (1974), p.676.

어떤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Yamada(1983 : 81))

이러한 CC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 나타난 것이 Adjacency Principle(AP)이다.

(5) 자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서는 모음만이 개재될 수 있고, 모음이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에서는 자음만이 개재될 수 있다.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또는 역으로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분절음도 개재될 수 없다.(Jensen(1974 : 678))

이 AP는 분명히 CC보다는 조금은 더 강력한 것이지만, 모음조화 규칙의 경우 대부분 中性母音이 개재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아직은 개재음에 대한 一般性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李秉根(1977)에서 同類의 AP가 提示되었는데 동일한 비판을 할 수 있겠다.

(6) 音韻論的 規則에서 〔+sonorant〕가 〔+sonorant〕에 영향을 미칠 때 개재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sonorant〕 즉 〔+obstruent〕인 것이다.(李秉根(1977/*1978 : 16)

무엇보다 모음조화 규칙에서 중성모음이 개재된다는 것과 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인 움라우트 규칙의 경우 개재음은 〔+obstruent〕 중에서도 〔−coronal〕로만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의 CC나 AP는 개재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개재음이 될 수 있는 분절음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2. Relevancy Condition

앞에서 살펴 본 CC나 AP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보다 일반화될 수 있는 변항 제약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Jensen(1974)의 Relevancy Condition (RC)이다.

(7) 음운론적 규칙에 있어서 오로지 非相關(irrelevant) 分節音만이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될 수 있다. 만약 적어도 하나의 자질이 대분류 자질이라면 규칙의 피동화음과 동화주에 공유되는 자질로 이루어지는 분절음군은 그 규칙의 相關 분절음들이다. 공유되는 대분류 자질이 없다면 모든 분절음은 상관적이다.(Jensen(1974 : 680))

이러한 RC는 개재음 유무에 대한 조건과 개재음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변항 제약조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Odden(1977, 1980)에서 적절히 지적되었다.

Odden에 따르면 Karok語의 s-구개음화의 경우 분명히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아무런 공유자질이 없으면서도 자음을 개재시킬 수 있다는 점, Menomini語의 半開母音 上昇 規則(mid vowel raising)에서는 〔+syll〕을 공유하므로 RC에 따를 경우 자음만 개재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모음도 개재될 수 있다는 점 등이 Relevancy Condition에 대한 反例로 지적될 수 있다.

2.3. Class Complement Constraint

Odden의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변항 제약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Yamada(1983)의 Class Complement Constraint(CCC)이다.

(8) A→B／YCX—Z 또는 A→B／Y—XCZ
라는 형식의 음운론적 규칙에 있어서 變項 X는 A(focus), B(structural change), C(determinant)로 구성되는 집합의 相補 集合에 속하는 분절음만으로 이루어 진다.(Yamada(1983 : 36))

이것은 Odden의 비판에서 문제된 RC의 "공유되는 대분류 자질이 없다면 모든 분절음은 상관적이다"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재음의 특성에 관해서만 記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개재음 유무의 조건을 삭제했다는 데에 있다. (8)의 제약대로 한다면 개재음이 없는 경우 A, B, C로 이루어 지는 집합의

상보 집합은 ϕ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A, B, C로 이루어 지는 집합은 모음과 자음의 모든 분절음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의 변자음화나 비음화 규칙의 경우는 분명히 개재음을 두지 않으면서 A, B, C사이에 〔+cons〕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보 집합은 모음 전체의 집합이 된다. 따라서 (8)의 제약대로 한다면 국어의 변자음화나 비음화의 경우는 모음을 개재시킬 수 있다는 그릇된 예측을 하고 만다.

이러한 문제점은 CCC가 개재음이 있는 경우에만 집착하고, 개재음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진정한 변항 조건으로 개재음 유무의 조건과 개재음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은 RC와 CCC를 종합할 것이나 RC를 주로 하고 CCC는 RC의 문제점을 배제하는 線에서 취할 것이다.

Ⅲ. 國語의 音韻論的 變項 制約條件

3.1. 介在音 有無에 대한 條件

먼저 국어의 동화규칙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a. 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 움라우트, 모음조화
b. 자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 변자음화, 비음화, 유음화
c.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 구개음화
d.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 원순모음화

위의 규칙들 중에서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음이 존재하는 것은 움라우트, 모음조화 및 유음화 규칙이다. 이들이 개재음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餘他의 규칙들과 비교하여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의 공유자질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우선 움라우트 규칙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6]

$$(10)\ \begin{bmatrix} V \\ -long \end{bmatrix} \rightarrow [-back] / _ \begin{bmatrix} C \\ -cor \end{bmatrix} (+) \begin{bmatrix} +voc \\ -back \\ +high \end{bmatrix}$$

규칙 (10)에서 보면 동화주와 피동화음에 공유되는 자질이 〔+voc〕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voc〕을 공유자질로 하면 개재음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유음화 규칙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아직은 성급한 판단임이 드러난다.

$$(11)\ \begin{bmatrix} +nas \\ +cor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cons \\ +voc \end{bmatrix} / \begin{bmatrix} +cons \\ +voc \end{bmatrix} \begin{Bmatrix} \# \\ C \end{Bmatrix} __$$

(#는 내부 단어경계)

(11)의 유음화 규칙에서 보면 변별적인 자질만으로는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아무런 공유자질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동화주인 l과 피동화음 n 사이에는 잉여적으로 〔+sonorant〕라는 공유자질을 갖는 것이다. 앞의 (10)에서의 〔+voc〕자질도 마찬가지로 잉여적으로 〔+sonorant〕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일단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잉여적으로 〔+sonorant〕 자질을 공유하면 개재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모음조화 규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voc〕 자질을 공유한다는 점, 그리하여 잉여적으로 〔+son〕를 공유자질로 하기 때문에 개재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위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이처럼 RC와는 달리 공유자질을 〔+son〕로 규정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어의 변자음화나 비음화는 〔+cons〕를 공유자질로 가지면서도 개재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text{변자음화}:\ \begin{bmatrix} C \\ -grav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grave \\ \alpha point \end{bmatrix} / - + \begin{bmatrix} +grave \\ \alpha point \end{bmatrix}$$

6) 本稿에서 소개되는 規則들은 주로 李秉根(1978) 및 金政佑(1984) 등에서 再引用하는 것이다.

(13) 비음화 ; C→〔+nasal〕/_+〔+nasal〕

RC로도 예측할 수 있듯이 공유자질이 없는 구개음화나 원순모음화 규칙의 경우는 개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앞의 결론에서 자동적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재음 유무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14) 개재음 유무의 조건 ;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잉여적으로 〔+sonorant〕 자질을 공유할 때에만 개재음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14)에서의 "잉여적으로"라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Odden(1977, 1980)에서 말하는 "overspecification"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overspecification의 문제란 규칙 서술에 있어서 비변별적인 자질은 규칙에 명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Odden(1980 : 301)에 다음과 같은 資質 明細 制約(feature specification constraint)을 내세운 바 있다.

(15) αF라는 자질을 제거해서 그 규칙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한 αF의 자질이 명세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자질 명세 제약에서 볼 때 (14)에서 말한 "잉여적으로"라는 표현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잉여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규칙화의 작업에 포함함으로써 오는 간략성의 평가척도(simplicity evaluation measure)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記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그 자질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10)～(13)의 규칙 서술에는 변별적 자질만을 사용했다. 이것은 overspecification의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다만 개재음 유무의 조건으로는 잉여적 자질 〔+son〕을 언급하였다. 이것만으로 완전하다고 할 순 없지만 개재음이 없는 다른 규칙들과 비교하여 개재음이 있는 경우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

징이 잉여적인 〔+son〕 자질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비록 "잉여적으로"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국어의 유음화 규칙은 Odden의 주장과는 달리 개재음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overspecifica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問題는 資質明細에 의한 方法論이 全面的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14)의 介在音 有無의 條件은 어떠한 意義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자. 우리는 序論에서 本稿의 出發點으로 원격동화와 인접동화를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개재음이 있는 규칙들과 개재음이 없는 규칙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준이 바로 (14)의 조건인 것이다. (14)에 따르면 (2′)에서의 구개음화 규칙에서 X는 자동적으로 ϕ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개재음이 있는 경우 그것은 어떠한 분절음들로 이루어 지느냐의 문제인 바 이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개재음의 특성인 것이다.

3.2. 介在音의 特性

3.2.1. 움라우트

움라우트에 대한 지금까지의 論議들을 종합해 보면 움라우트 규칙은 介在子音을 必須的으로 하는 것이고, 그 개재자음은 〔-cor〕 즉 非舌頂的 子音들로 이루어 짐이 밝혀졌다.[7]

그런데 최근 기세관(1983)에서 전남 북서부 방언은 특히 被·使動詞를 形成하는 경우 動詞의 語幹이 母音으로 끝날지라도 縮約(contraction)을 보이지 않고 움라우트를 일으킨다고 주장하여 마치 움라우트가 개재자음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이는 움라우트와는 무관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李丞宰(1983)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문제의 피·사동 접미사 /-i-/가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7) 金完鎭(1971a, b), 李秉根(1971) 등 참고.

어의 /-iu-/와 관련하여 基底形에 /-ii-/를 設定하여 滑音形成으로 본다면 움라우트 규칙은 항상 개재자음을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두면서 실현되는 규칙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8]

우선 움라우트의 예들을 들어 개재음의 특성을 논하기로 하자.

(15) a. 아기→애기, 고기→괴기, 아비→애비, 어미→에미
b. 먹이다→멕이다, 잡히다→재피다, 벗기다→베끼다, 맡기다→매끼다
안기다→앵기다
c. 드리다→디리다, 차리다→채리다, 다리다→대리다
d. 달리다→*댈리다, 들리다→*틸리다, 갈리다→*갤리다 등[9]

(15) a.는 語幹 形態素에 드는 예이고, (15) b.는 被·使動의 派生接尾辭와 結合될 때 나타나는 例들이다. 앞에서 움라우트 규칙을 (10)과 같이 세울 경우 문제는 (15) c.에 나타나는 개재음 ㄹ이 〔+cor〕임에도 불구하고 개재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15)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ㄹㄹ-은 절대로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 못하므로 구개음화가 실현되는 -ㄹㄹ-〔-ɨɨ-〕과 -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움라우트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15) a, b, c에서 볼 때 움라우트 규칙의 개재음은 자음 중에서 ㄹ을 제외한 〔−cor〕인 자음들로 이루어 진다. 이것은 국어의 움라우트 규칙만이 가지는 특수성인 바 앞에서 설명한 변항 제약조건들로는 예측

8) 이러한 방법외에 비교 방언학적 입장에 선다면 基底에다 被·使動 接尾辭로 /-γi-/를 세울 수도 있겠다. 求禮地域語와 慶北 東海岸 특히 迎日地域語간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빼이다(求禮)	vs.	따끼:다(迎日)	(노름해서 돈을——)
태이다	vs.	타기:다	(車를——)
재이다	vs.	자기:다	(잠을——)

다만 이러한 설명 방법에는 기저형의 추상성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9) 金完鎭(1971) 外 多數 論文 참고.

될 수 없는 사실이다. RC나 CCC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개재음이 〔−voc〕 즉 〔+cons〕로 이루어 진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cor〕만으로 이루어 지므로 이러한 주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움라우트와 구개음화 규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규칙이 bleeding order를 이룬다는 것이다. (李秉根(1971)) 이러한 두 규칙간의 상보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해 볼 수 있다.

(19) 두 규칙이 서로 상보적인 bleeding order를 이룬다면 개재음은 상대방 규칙의 동화주나 피동화음 및 그 규칙의 출력(output=structural change)도 취할 수 없다.

가령 -t구개음화 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16)\ \begin{bmatrix}-\text{voc}\\+\text{cor}\end{bmatrix}\rightarrow\begin{bmatrix}+\text{high}\\-\text{ant}\\+\text{strid}\end{bmatrix}\Big/-+\begin{bmatrix}+\text{voc}\\-\text{back}\\+\text{high}\end{bmatrix}$$

(16)의 t-구개음화 규칙에서 보면 동화주 i와 피동화음 {ㄷ, ㅌ} 그리고 출력인 {ㅈ, ㅊ} 모두 움라우트 규칙의 개재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s-구개음화, n-구개음화, l-구개음화 모두 적용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움라우트 규칙의 개재음은 구개음화 규칙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음을 알았다.

3.2.2. 流音化

국어에서 유음화(유음동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훑는→〔훌른〕'과 같이 개재자음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놀이→〔물로리〕'처럼 개재자음 없이 내부 단어경계를 사이에 두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자어에서의 '천리→〔철리〕, 찰나→〔찰라〕' 등은 그 경계가 문제되는 것이지만 대체로 後者에 소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前者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李秉根(1977)의 Adjacency Principle에

따라 유음화의 개재음은 〔−sonorant〕 즉 〔+obstruent〕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前者와 後者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 경계문제를 추가하여 일반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유음화의 예들을 모두 모아 보자. (李秉根(1977) 및 金政佑(1984)의 例들을 再引用)

(17) a. 훑+는→〔훌른〕
　　 앓+는→〔알른〕
　　 짧+니→〔짤리〕
　　 밟+는→〔발른〕
　 b. 말#놓다〔말로타〕
　　 줄#넘다〔줄럼따〕
　　 불#넣다〔불러타〕
　　 일#나다〔일라다〕
　 c. 달#나라〔달라라〕
　　 물#놀이〔물로리〕
　　 한글#날→〔항글랄〕
　 d. 솔#나무→소나무～〔솔라무〕
　　 불#나비→부나비～〔불라비〕

(17) a. 는 개재자음을 두는 경우이고, (17) b, c, d는 내부 단어경계[10]를 개재시키는 경우이다. 내부 단어경계는 국어에서 자음과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유음화에 있어서의 내부 단어경계는 다른 규칙들과 비교해 볼 때 경계의 기능이 조건적 기능 즉, 경계가 유음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 경계가 규칙의 적용을 차단하는 모음조화 등의 경우와는 다르다. (金政佑(1984 : 69～73))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우리는 유음화 규칙의 개재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다.

10) 境界에 관한 용어나 및 기능에 대한 설명 등은 金政佑(1984)에 따른다.

(18)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son〕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 개재음은 〔−son〕 즉 〔+obst〕이거나 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단어경계일 수 있다.

(18)과 같이 일반화할 때 남는 문제는 경계를 개재음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유음화에 있어서 내부 단어경계는 억제적 기능이 아닌 조건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비록 경계를 음소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기능상으로는 개재자음과 구별되지 않는다. 모든 규칙의 경계를 다 개재음과 함께 논할 수는 없지만 특히 조건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음화의 경우는 경계를 개재음과 동일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3.2.3. 母音調和

15세기 모음조화 규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ᄋᆞ' 모음이 '으' 모음과 合流함으로써 모음조화 규칙이 매우 弱化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李基文(1972) 등) 따라서 극히 제한된 예들로 규칙화한다는 自體가 의미없어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다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확실해진 개재음의 특성을 확인하는 선에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현대 국어의 모음조화는 용언 어미 '-아/어'의 교체를 중심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 a. 깊어, 베어, 매어, 뛰어, 되어, 늦어, 먹어, 죽어, 두어
b. 녹아, 맑아 등(李秉建(1976 : 16)에서 再引用)

(19) a, b의 예들을 보면 개재음이 있는 경우는 모두 자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음조화가 모음간의 상호동화이기 때문에 개재음은 〔−voc〕 즉 〔+cons〕임을 통해서 개재음에 대한 지금까지의 설명에 부합된다.

이러한 해석은 15세기 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다만 15세기는 아직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자음과 함께

滑音이 개재될 수 있다.

또 하나 모음조화 규칙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中性母音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음조화의 경우는 중성모음을 뛰어 넘어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Yamada(1983 : 56)에서와 같이 모음조화에 대한 下位 條件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20) 중성모음을 포함하는 모음조화의 경우 중성모음을 제외한 어떠한 모음도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개재될 수 없다.

이상 간단히 살펴 본 모음조화의 경우는 움라우트나 유음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재음은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공유자질로 예측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結 論

지금까지의 論議를 綜合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국어의 음운론적 변항에 대한 제약조건을 세울 수 있다.

(21) 音韻論的 規則에 있어서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잉여적으로 〔+sonorant〕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그 사이에 非相關 分節音에 限해서 介在音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적어도 하나의 자질이 대분류 자질이라면 동화주와 피동화음에 공유되는 자질로 구성되는 분절음군은 그 규칙에 상관적인 분절음들이다. 동화주와 피동화음에 공유되는 자질이 없다면 모든 분절음은 상관 분절음이며, 두 규칙이 상보적인 관계(bleeding order)를 이룬다면 상대편 규칙의 동화주나 피동화음 SC 모두 상관 분절음이다.

이 변항 조건에 따라 우리는 지금까지 원격동화니 인접동화니 하여 따로 설명되어온 규칙들에 대하여 비로소 하나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序論에서 제기하였던 움라우트와 구개음화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국어의 동화 규칙에 포함되는 모든 규칙은 이 변항조건 하나로 개재음에 대한 해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고의 논의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고는 筆者의 能力 부족으로 많은 오류를 남겼으리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overspecification의 문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고에서와 같은 자질 명세에 의한 방법론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결론이 잠정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補完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參 考 文 獻

기세관(1983), 전남 북서부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국문학 90.

金手坤(1978), 現代國語의 움라우트 現象—「아기」와 「애기」를 中心으로—, 國語學 6.

金完鎭(1971a),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0.

_____(1971b), 國語音韻體系의 硏究, 一潮閣.

_____(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 11.

_____(1978), 母音體系와 母音調和에 대한 反省, 語學硏究 14-2.

金政佑(1984), 國語 音韻論의 境界問題에 관한 硏究, 國語硏究 59.

徐禎穆(1981), 慶南 鎭海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하여, 方言 5.

宋喆儀(1977), 派生語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硏究 39.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槪說, 塔出版社.

李秉建(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一志社.

李秉根(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_____(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_____(1978),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硏究 45.

_____(1983),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구례지역어의 경우—, 「白影鄭炳昱先生還甲紀念論叢」

Howard, I.(1972), A directional theory of rule application in phonology, MIT dissertation(IULC 1973, Bloomington)

Jensen, J.T.(1974), A Constraint on variables in phonology, Language 50—4.

Kim, Soo-Gon(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Tower Press.

Odden, D.(1977), Overspecification and variables in phonology, Linguistic Analysis 3.

_____(1980), The irrelevancy of the relevancy condition: Evidence for the feature specification constraint, Linguistic Analysis 6-3.

Yamada, N.(1983), A constraint on Phonological Variables, Linguistic Analysis 12—1.